

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

1. 양도소득세 전자신고

- ◎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2. 전자신고 세액공제

- ◎ 2021.1.1. 이후 전자 신고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(1건당 2만원)가 가능합니다.
- ※ 예정신고 1건당 세액공제 2만원으로 연간 한도가 없으며, 확정신고, 기한후신고,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제외

3. 신고방법

- ◎ **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**
- ◎ **신고도움자료 제공(공동·금융인증서/간편인증 로그인)**
 - ※ 부동산등기자료, 국토부실거래가자료, 취·등록세납부자료, 현금영수증(중개수수료, 법무사비용 등)
- ◎ **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**
 - 로그인 ⇨ 신고/납부 ⇨ 양도소득세 ⇨ 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
- ◎ **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/납부 ⇨ 세금신고 ⇨ 양도소득세 ⇨ 전자신고 이용방법(동영상/가이드북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**

모바일 손택스 신고

손택스는 회원로그인(인증서/아이디/지문인증)과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가능합니다.



*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, 미리계산(모의계산), 신고 증빙서류 제출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.

홈택스 신고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


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
(공동·금융인증서/간편인증서)하면 전자신고와
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1. 간편신고

한 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(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가능)

2. 일반신고

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

- **예정신고**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
- **확정신고**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(5월에만 신고가능)
- **기한후신고**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신고
- **수정신고**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

증빙서류 제출

전자신고 후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홈택스 로그인 ⇨ 신고/납부 ⇨ 양도소득세 ⇨ 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

세금신고 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 신고

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(접수증·납부서) **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** 삭제내역 조회

- 세금 신고서에 대한 부속·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신고기간 중 **신고서를 다시 제출**한 경우 **부속·증빙서류도 새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부속서류 제출 방법
 -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<부속서류> 항목에 나타난 「첨부하기」 버튼을 이용하여 제출
 - 제출한 부속서류에 대해 조회·삭제하거나 부속서류 추가제출은 「제출내역보기」 버튼 이용

○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⇨ 신고/납부 ⇨ 양도소득세 ⇨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

홈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**신고 납부** 상담 제보

양도소득세

-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**
-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회
- 양도소득세 신고 삭제내역 조회
- 양도소득세 자동계산
-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